

체육시설운영단 운영규정

규정명 : 체육시설운영단 운영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

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(이하 ‘본교’라 한다) 체육시설운영단 및 체육시설·기구(이하 “체육시설”이라 한다)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본 규정은 체육시설운영단 및 체육시설을 운영, 관리하는 교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적용한다.

제 3 조(사용범위)

체육시설운영단 및 체육시설은 학생의 수업과 선수훈련을 위해 사용한다. 다만, 수업이나 선수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우선 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1. 거교적 교내행사
2. 본교 동문회 체육대회 및 본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
3. 구성원(교직원 및 재학생)의 체육활동
4. 기타 체육시설운영단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의 체육활동

제 2 장 조직과 임무

제 4 조(조직)

체육시설운영단 및 체육시설의 운영조직은 다음과 같다.

1. 단장
2. 체육시설운영위원회
3. 행정직원

제 5 조(단장)

- ①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 단장은 체육시설운영단 및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통괄하고 제4조의 행정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
제 6 조(체육시설운영위원회)

- ① 체육시설운영위원회는 국제캠퍼스 부총장을 위원장으로, 체육시설운영단장, 체육대학장, 체육부장, 대외협력처장, 미래혁신단장, 기획조정처장, 총무관리처장을 위원으로, 체육시설운영단 행정과장을 간사로 둔다.
- ② 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문한다.
 1. 시설운영에 따른 정책 사항 자문
 2. 고가 운동기자재 도입 자문
 3. 프로그램 운영 교강사 관련 자문
 4. 기타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6 조(행정직원)

① 체육시설운영단 및 교내 체육시설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행정직원을 둔다.

② 교직원은 제반 행정을 담당하고,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체육시설을 이용한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2. 실내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
3. 선승관 및 실외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

제 7조(시설구분)

체육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①체육대학내 실내체육시설

1. 태백도장
2. 백두도장
3. 한라도장
4. 유도장
5. 탁구장
6. 에어로빅장
7. 체력단련장
8. 체조장
9. 핸드볼장
10. 배드민턴장
11. 배구장
12. 농구장

②선승관

1. 다목적체육관
2. 체력단련장
3. AT실
4. 태권도훈련장
5. 계단강의실
6. 세미나실

③실외체육시설

1. 하키장(공과대학앞)
2. 농구장(공과대학앞)
3. 테니스장(하드코트)
4. 테니스장(클레이코트)
5. 축구장(천연잔디)
6. 족구장(체육대학앞)
7. 농구장(전자정보대학앞)
8. 족구장(전자정보대학앞)
9. 력비장
10. 제1야구장
11. 제2야구장

제 8 조(시설사용 허가신청)

①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운영단 및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캠퍼스 체육시설 대관 시행세칙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단장은 수업 및 선수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한다.

제 9조(시설사용료)

① 단장은 제 3조 제4호의 경우에는 유휴 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(②)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대관의 범위와 절차, 대관료 등에 대하여, 별도의 국제캠퍼스 체육시설 대관 시행세칙을 둔다.

제10조(기재의 반출금지)

각 시설 내에 비치된 각종 체육기구는 시설외부로 반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1조(손망실 처리)

사용자는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 및 기구의 손망실에 대해 변상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시설 사용 제한

제 12조(사용시간)

체육시설운영단 및 체육시설의 사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:00 - 17:30 사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이 기간 이외의 사용은 단장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3조(조명사용의 제한)

각 체육시설의 사용에 있어 조명 사용은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4조(음주자의 사용제한)

음주자 등 체육시설 사용을 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체육시설운영단 및 체육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5조(사용승인의 취소)

사용자는 시설 및 기구의 사용자 준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시설장은 단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 4장 시설사용자 준칙

제16조(체육시설 사용자 준칙)

체육시설운영단 및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고 체육시설별로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시설 및 기구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올바로 사용할 것.
2. 허가된 사용목적과 시간을 염수할 것.
3. 청결과 정리정돈, 절전, 절수에 유의하고 사용 후에는 원상태 대로 정리 할 것.
4.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정해진 운동화를 신을 것.
5. 화재에 주의하고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화기 사용 및 흡연을 금할 것.
6. 사용자는 시설장 또는 담당자의 안내 및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.
7. 기구 및 부속설비의 취급에 주의하고 파손, 분실 시에는 시설장 또는 담당자에게 즉시 알릴 것.
8. 사용자는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사용자 주의 의무가 있음을 명심할 것.
9. 사용자는 개인 사물 특히 귀중품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.
10. 시설의 마지막 사용자 및 책임자는 기구의 정돈, 창문, 전기, 화기 등 안전상태를 점검한 후 퇴실하고 시설장(담당자) 또는 수위실에 통보할 것.
11.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기구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함.
12. 시설사용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.
13. 위의 준칙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학교측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중이라도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17조(보칙)

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체육시설운영단장이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조 본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